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의안 번호	15175
----------	-------

요구연월일 : 2025. 12. 11.

요 구 자 : 문금주 · 민병덕 · 백승아
조인철 · 이성윤 · 박홍배
김현정 · 이주희 · 윤종균
이용우 · 김기표 · 전진숙
박상혁 · 김남근 · 채현일
안태준 · 김문수 · 김동아
문진석 · 이기현 · 박용갑
허영의원(22인)

주 문

국회의원(곽규택)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규택은 2025년 12월 9일 목요일, 본회의장에

서 국회의원 나경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한 국회의장의 수차례의 경고 묵살에 따른 제재 조치로 마이크가 중단되자 국회의원 나경원의 의제 외 발언이 유튜브로 불법 송출될 수 있도록 허가받지 않은 마이크를 건네주고, 심지어 불법 홍보물을 반입하여 의원 발언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가 하면 발언대에 손피켓을 게첩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음.

다. 이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특히 국회의장이 의사진행 방해 금지를 수차례 경고하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성이 높다고 할 것임.

라. 또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화되어 있는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제 외 발언을 계속 이어가도록 부추기고, 이도 모자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정치쇼와 불법 유튜브 장사질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임.

마. 이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방해(「국회법」 제145조)를 한 것을 넘어 국회 질서에 대한 무시이자,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의회민주주의에 조롱에 해당함. 특히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발동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난동과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엄히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사안임.

바. 무엇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59건은 국민의힘의 입법 방해 목적에 의한 무제한 토론 때문에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나온 행태로 해당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개인의 정치적 야욕과 정쟁적 목적을 갖고 민생법안을 불모로 잡는 국민의힘 인질극의 허상과 민낯은 국민적 질타의 대상임.

사.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원 광규택의 소란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임.

아. 위와 같이 국회의원 광규택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국회의원윤리강

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